

사법행정자문회의 제5차 회의 결과요지

2020. 4. 17. 운영지원단

◆ 사법행정자문회의 제5차 회의 개요 ◆

1. 일시 : 2020. 4. 9.(목) 10:00~13:20

2. 장소 : 대법원 409호 회의실

3. 참석자

- 대법원장(의장)
- 김순석, 김진석, 박균성, 오승이, 윤준, 이광만, 이미경, 이찬희, 최한돈(이 상 위원, 가나다 순)
- 이창열(간사), 고원혁, 서현웅(이상 서기)

4. 배석자

- 이헌환(상고제도개선 특별위원회), 김성수(재정·시설 분과위원회), 김동규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김정숙(사법정책 분과위원회), 서경환(법관인사 분 과위원회)
- 최수환, 홍동기(이상 운영지원단장), 박노수, 안희길, 김도현, 양석용, 유제민, 배진호, 공건개, 강정현(이상 운영지원단원)

5. 의사개요

- 가. 사법행정자문회의 운영 관련 보고(서면보고)
 - 1) 간사 및 운영지원단 구성 변경 보고



○ 이창열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이 신임 간사로 지명되었고, 법관 및 법원공무원 정기인사 등을 반영하여 운영지원단이 새로 구성되었음을 서면으로 보고함

2) 웹 공간 개선사항 보고

○ 웹 공간 개선사항(위원 정보 업데이트, 메일링 서비스 개시)을 서면으로 보고함

나. 사법행정 주요사항 보고(서면보고)

1) 법원조직법 개정사항 보고

○ 법원조직법 주요 개정사항{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 폐지(제27조 제2항 및 제3항 등), 법관 임용 결격사유(제43조), 윤리감사관 개방형 직위 전 황(제71조의2 신설)}을 서면으로 보고함

2)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보고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인천지방법원 북부 지원, 창원가정법원 설치)을 서면으로 보고함

3)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 개정에 따른 대표자 선출 보고

○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 개정사항 및 개정 규칙에 따라 선출된 각급 법 원 법관 대표자 명단을 서면으로 보고함

다. 상고제도개선 특별위원회 논의 경과 및 향후 계획 관련 보고(소관: 상고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 이헌환 특별위원회 위원장, 상고제도개선 특별위원회 논의 경과 및 향후 계획 보고
- 다음과 같은 위원들의 의견이 있었음



- 의원입법 또는 정부입법인지에 따라 공론화 주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입법 형식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함
- 논의 중인 3가지 방안의 장점을 취합한 제3의 안 역시 검토했으면 좋 겠음
- 대법원 이원적 구성안의 경우 대법관과 대법원 판사와의 관계, 적절한합의 방식 등 여러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듯함. 그런 점을 고려하여 논의해주었으면 좋겠음
- 상고제도 개선은 사실심 충실화와 함께 논의되어야 하고, 사실심 충실화를 위해서는 하급심 법관 증원이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논의가 없음
- 상고제도 개선을 검토함에 있어 1, 2심에 대한 신뢰 증진 방안도 같이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일반 국민 입장에서 상고제도 개선 논의는 굉장히 생경한 법적 언어로 쓰여 있으므로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공론화 할 때는 쉬운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함
- 의장은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음
 - 특별위원회에서도 실질적으로 1회 논의를 진행한 상황이기 때문에 추후 많은 내용이 추가될 예정임을 감안하셔야 함. 일단은 검토 경과를 조금 더 지켜보시고, 추후 온라인 의견란에 의견을 주시면 전달하도록 하겠음
 - 특별위원회에서도 너무 속도나 시간에 구애받지 마시고 충실한 검토를 진행했으면 좋겠음



라. 법원시설관리 예산 배정기준(소관: 재정·시설 분과위원회, 서면보고)

- 법원시설관리 예산 배정기준을 서면으로 보고함
- 마. 전용차량 등 개선방안(소관: 재정·시설 분과위원회)
 - 1) 김성수 분과위원장 기초발제
 - 전용차량 배정기준 등 개선방안에 관하여 ①전용차량 배정기준 유지 여부, ②(전용차량 배정기준 변경 시) 구체적인 전용차량 배정기준안과 그시행시기, ③(전용차량 배정기준 변경 시) 배정기준 변경에 따른 보완조치를 논의 쟁점으로 제시함

2) 토론

- 다음과 같은 위원들의 의견이 있었음
 - 검찰은 마땅한 근거 없이 검사장에게 전용차량을 지급했던 것이고, 명예퇴직금 등 보완책을 마련했기 때문에 사실상 내려놓은 것이 없음. 법원의 경우 대법원규칙에 전용차량 지급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83대나 되는 전용차량을 반납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고,고등부장이 폐지됨으로써 향후 고등부장이 퇴직하면서 생기는 자연감소분만큼은 당연히 전용차량이 반납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앞당겨 반납하는 것은 반대함. 오히려 전용차량 지급대상을 늘려 처우가 좋지 않은 고위법관에 대한 예우를 개선하는 것이 유능한 법관을 양성할수 있는 방안임
 - 현재 고등부장에게 지급되는 전용차량은 그 용도가 대부분 출퇴근에 불과하므로 전형적인 예산낭비에 해당하고, 이미 폐지된 법관에 대한 직급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명분상으로도 유지할 실익이 없



- 음. 전용차량을 유지하는 경우 국회와 국민으로부터 권위적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고, 앞으로 상고제도 개선 등에서 국민의 지지와 국회의협조를 얻기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에 하루속히 전용차량 지급 기준을변경해야 함. 보완조치 관련, 고등부장에게도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되,명예퇴직 수당은 고등부장 재임기간 중 전용차량을 배정받지 못한 기간에 비례해서 지급하는 안을 제안함
- 법관에 대한 예우가 필요하긴 하나 그 예우가 전용차량 지급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임. 법관이 특권을 내려놓고 국민에 게 다가서는 모습을 보여줄 때 존경을 받게 될 것임. 다만 이미 주어진 전용차량을 박탈하는 것은 신뢰 측면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명예퇴 직수당, 직무성과금 등 보완책은 마련될 필요가 있음
- 재판의 독립은 법관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고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전용차량 문제는 법관의 신분보장이라는 면을 고려하여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 퇴직하는 고등부장에 대한 전용 차량은 자연히 감소되므로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그 감소분은 고등법 원 재판장 2인에 대해 1대 정도라도 지원하는 것이 내부 구성원들의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이 될 수 있음
- 고등부장이 직급으로 운용되는 점에 대해서는 오랜 기간 문제제기가 있었음. 고등부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위주로 운용되는 전용차량을 지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개선하는 것이 필요함. 전용차량은 일종의 후생복리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변경 가능하고, 헌법 위반도 아님



- 일반국민 입장에서 전용차량 폐지 또는 축소 방안이 더 설득력 있다고 여겨질 것임. 전용차량 폐지 또는 축소에 대한 보완책으로는 직무성과 금보다는 직급보조비 증액이 현실적인 방안이라 생각함
- 전용차량은 업무상 필요에 따라 배정하는 것이 일반적 추세임.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출퇴근 용도로 사용하는 전용차량은 폐지하되, 직무성과금 등 보완책을 마련했으면 좋겠음. 다만 가정법원장을 포함한 기관장에 대해서는 전용차량이든 업무용 차량이든 지원했으면 좋겠음. 명예퇴직수당은 명예퇴직 유도라는 본래 취지에 맞게 사용되어야 하므로, 전용차량 폐지에 대한 보완책으로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 평생법관제 정착을 위해 법관이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처우를 개선하고 정년도 연장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안타까운 점은 전용차량 개선을 법원에서 먼저 제안했으면 현행 제도를 유지하고 자연감소분만 반납하는 방안이 환영받았을 텐데, 지금 상황에서 자연감소분만 반납하겠다고 하면 기득권 옹호라는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점임. 따라서 실질적인 보완책을 강구하면서 전용차량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생각함
- 기득권을 내려놓을 때 국민들의 존중과 신뢰는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 함

3) 결정사항

○ 재판업무만을 담당하는 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하여는 전용차량을 배정 하지 않는 것으로 전용차량 배정기준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함(다수의



전, 이에 대하여 그대로 배정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이 있었음). 각급 법원장을 비롯한 기관장과 대외기관 업무수행상 필요성이 큰 일부 보직자에 대하여는 전용차량 배정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 변경된 배정기준의 시행시기와 폐지 시 보완조치에 관하여는 다음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함(시행시기와 폐지 시 보완조치에 관한 검토를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지시함)
- 바. 정식재판청구/공판회부 사건의 증거분리제출 시행방안(소관: 재판제도 분 과위원회)
 - 1) 김동규 분과위원장 직무대행 기초발제
 - 정식재판청구/공판회부 사건의 증거분리제출 시행방안에 관하여 ①정식 재판청구/공판회부 사건에서의 증거분리제출제도 시행 여부, ②제도 시 행의 구체적인 방안, ③관련 예규 개정, ④시행의 시기 및 범위를 논의 쟁점으로 제시함

2) 토론

○ 위원들은 재판제도 분과위원회가 제시한 기본방향에 전반적으로 동의하 였음

3) 결정사항

- 정식재판청구/공판회부 사건에 관하여 증거분리제출제도를 시행하지 아 니할 법적인 근거가 없고, 증거분리제출제도를 시행할 현실적인 여건도 마련되었음. 따라서 실질적인 공판중심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이에 관 하여도 증거분리제출제도를 확대하여 시행함이 바람직함
- 이를 위하여 정식재판청구/공판회부 사건 전체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



또는 공판회부 결정 이후 10일 이내에 약식계에서 해당 검찰청으로 수 사기록을 반환하는 것이 바람직함

-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하여, 고정/고단재판부의 통합운영 또는 고정전 담재판부에 대한 배당에서의 고려, 담당 직원들 사이의 적절한 업무 분 장 및 인력 보충, 관련 예규의 개정, 검찰과의 업무 협조 등이 필요함
- 절차상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2020년 하반기에 일부 법원을 상대로 시 범 실시하고 문제점 등을 보완하여 2021년 정기인사에 맞추어 이를 전 면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음

사. 전문법원 설치 필요성 및 우선순위에 관한 중간보고(소관: 사법정책 분과 위원회, 서면보고)

- 전문법원 설치 필요성 우선순위에 관한 중간보고를 서면으로 보고함
- 다음과 같은 위원들의 의견이 있었음
 - 노사관계법원을 단기가 아닌 중기적 검토 필요 법원으로 분류하는 것 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노사관계법원'이라는 명칭에 대해서 도 재고가 필요함
 - 해사법원을 단기적 검토 필요 법원으로 설정한 것에 대해 공감대가 이루어진 것인지 의문임
 - · 발제자 답변: 전문가를 초청하여 의견을 들었는데 해사법원이 설치됨 으로써 얻게 되는 장점에 위원들이 공감을 했음. 지적하신 것처럼 해 사사건이 무엇인지, 해사법원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공감대 형성 시 간은 필요하다고 생각함
 - 분과위원회에서 해사법원의 중요성을 잘 파악했다고 생각함. 해사사건



이 현재 해사법원이 설치된 영국, 중국 등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빨리 해사법원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함

아. 시각장애인에 대한 점자판결문 등 서비스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소관: 사법정책 분과위원회)

1) 김정숙 분과위원장 기초발제

○ 시각장애인에 대한 점자판결문 등 서비스 개선 방안에 관하여, ①판결문의 점자·전자 파일 등 개별 수요에 맞는 제공의 필요성, ②판결문 점자·전자 파일 등 제공 방안, ③판결문 외 소송서류에 대한 확대 필요성을 논의 쟁점으로 제시함

2) 토론

- 위원들은 사법정책 분과위원회가 제시한 기본방향에 전반적으로 동의하였고, 이에 더하여 다음과 같은 위원들의 의견이 있었음
 - 판결문 공개 신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소송 당사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각장애인에 대한 점자판결문 제공 여부도 같이 연구했으면 좋겠음
 - 한글을 모르는 외국인의 경우 판결문을 송달받고도 항소기간 및 항소 할 법원을 알지 못해 항소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문, 항소 기간, 항소할 법원 정도는 번역해서 알려주는 것이 어떨까 싶음

3) 결정사항

- 시각장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판결문을 점자나 전자파일 등 개별 시각장애인의 수요에 맞는 형태로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점자나 전자파일 등의 제공에는 관련 지식, 설비, 인력 등이 필요하므로, 우선은 문서 변환에 대한 전문성, 설비, 인력 등을 갖춘 외부 전문



기관과의 협약이나 위탁 등을 통하여 시행한 후, 그 시행 결과 및 수요를 면밀히 분석한 뒤 법원 자체적으로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변환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이 적절함

- 판결문 외 기일통지서와 같은 전형적인 문서도 변환하여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고, 점진적으로 그 밖의 소송서류에 대하여도 시각장애인의 신청 에 따른 형태로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 필요함
- 자. 법관에 대한 변호사평가 방안을 위한 논의기구 구성방식 등에 관한 검토 (운영지원단 보고)
 - 1) 김도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 기초발제
 - 법관에 대한 변호사평가 방안을 위한 논의기구 구성방식 등에 관하여, ①논의기구의 연구·검토 범위, ②논의기구의 구성 방식을 논의 쟁점으로 제시함

2) 토론

○ 위원들은 운영지원단이 제시한 기본방향에 전반적으로 동의하였음

3) 결정사항

- '법관에 대한 변호사평가' 개선 방안을 연구할 논의기구 구성 관련
 - 초기에는 'TF'형식으로 진행하다가 추후 '분과위원회' 방식으로 전환 할 필요가 있음
 - 추후 분과위원회는 한시적 특별위원회로 설치하는 것이 상당하고 그 명칭은 '법관평가제도' 특별위원회로 하는 것이 적절함
 -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초기 'TF'는 '법관 4명 + 변호사 4명' 정도로 구성함이 적절하고, 추후 '분과위원회'는 '법관 4명 + 변호사 4명 +



외부위원 2명'정도로 구성하는 것이 적절하며, 법관 위원은 전국법관대표회의 및 전국법원장회의 추천, 대법원장 지명 등의 방법에 의하는 것이 적절함

차. 사법행정자문회의 신규 안건 제안: 판결서 공개제도 개선

1) 오승이 위원(대표제안 위원) 제안 설명

2) 결정사항

○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의 보고를 받고 다음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결정 ※ 김순석, 박균성, 이미경, 이찬희 위원 이석

카. 2020년 법관 정기인사 결과 개요 보고

※ 안희길 인사총괄심의관, 배진호 인사심의관, 강정현 인사담당관, 서현웅 사무관(서기)을 제외한 배석자는 퇴장

1) 서경환 분과위원장 기초발제

- 현장 배부한 별도 자료에 의하여 2020년 법관 정기인사 관련 6개 보직 인사 결과를 보고함
 - ①가사소년 전문법관 선발, ②헌재 파견연구관 선발, ③대법원 판사연 구관 선발, ④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선발, ⑤사법연수원 교수 선발, ⑥고법판사 신규 보임

2) 논의사항

○ 위 6개 보직인사 결과 및 고법판사 신규 보임 기준에 관하여 논의함

타. 다음 회의: 사법행정자문회의 제6차 회의(임시회의)

○ 일시: 2020. 5. 14.(목) 14:00

○ 장소: 대법원



파. 비공개 또는 익명화 여부에 관한 의결

○ 자문회의는 제5차 회의 회의록 작성 시 비공개 또는 익명화 처리할 부 분은 없다고 의결함 <끝>